



나의 임금,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2016년도 최저임금 6,030원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 예시)

예시 시간급인 경우 TIME

- 1시간에 6,000원의 시간급을 받은 경우

시간급 6,000원 < 6,030원

(설명) 2016년도 최저임금 6,03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예시 일급인 경우 DAY

-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48,000원을 받은 경우

48,000원 ÷ 8시간 = 6,000원 < 6,030원

(설명) 48,000원 ÷ 8시간 = 6,000원은 2016년도 최저임금 6,03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예시 주급인 경우 WEEK

- 1일 4시간, 1주일(5일) 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144,000원을 받은 경우

144,000원 ÷ 24시간 = 6,000원 < 6,030원

(설명) 144,000원 ÷ 24시간(주5일 20시간 + 유급주휴 4시간) = 6,000원은 2016년도 최저임금 6,03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예시 월급인 경우 MONTH

- 월급 1,254,000원을 받고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한 경우

1,254,000원 ÷ 209시간 = 6,000원 < 6,03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월환산 기준 시간수 =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7 × 365} ÷ 12월 = 209시간

- 월급 1,356,000원을 받고 1주 44시간(월~금 8시간, 토 4시간)을 근로한 경우(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1,356,000원 ÷ 226시간 = 6,000원 < 6,03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인 경우 월환산 기준 시간수 = 226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7 × 365} ÷ 12월 = 226시간



플러스 정보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 부여 하여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에요.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231-0009	서울남부지청	02)2639-2100
서울강남지청	02)584-0009	서울북부지청	02)950-9880
서울동부지청	02)403-0009	서울관악지청	02)3281-3282
서울서부지청	02)2077-6000		

중부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032)460-4545	안산지청	031)412-1992
인천북부지청	032)540-7910	평택지청	031)646-1114
부천시청	032)714-8700	강원지청	033)269-3551
의정부지청	031)877-0009	강릉지청	033)650-2500
고양지청	031)931-2800	원주지청	033)769-0800
경기지청	031)259-0204	태백지청	033)552-0009
성남지청	031)788-1505	영월출장소	033)374-0009
안양지청	031)463-7300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3-0009	울산지청	052)272-0009
부산동부지청	051)559-6600	양산지청	055)387-0009
부산북부지청	051)309-1500	진주지청	055)752-0009
창원지청	055)239-6500	통영지청	055)645-0009

대구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667-6310	구미지청	054)450-3500
대구서부지청	053)605-9000	영주지청	054)639-1111
포항지청	054)271-6700	안동지청	054)851-8000

광주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062)975-6200 (064-728-6100)	군산지청	063)452-0009
전주지청	063)240-3400	목포지청	061)284-0009
익산지청	063)839-0009	여수지청	061)650-0108

대전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290	충주지청	043)840-4000
청주지청	043)299-1114	보령지청	041)931-6640
천안지청	041)560-2800		



일급으로 환산시 48,240원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시 1,260,270원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시간급 6,030원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www.minimumwage.go.kr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를 참고하세요



국번없이
1350
최저임금 위반 상담은 국번없이 1350번,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세요



최저임금액은
얼마 인가요?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 입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감액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

다만,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
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주지 의무는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연월일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주지하지 않을 경우
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구분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 되는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 수당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등)
-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등)
- 3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
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16년 1월
월급 1,425,120원을 받았을 경우, 아래와 같이 쉽게
계산하여 **최저임금 미만여부**를 판단해 봅니다.

1 내가 받은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추려냅니다.

월급 명세서(2016년 1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1,200,000원 상여금 100,000원 직무수당 50,000원 시간외수당 55,120원 가족수당 20,000원	기본급 1,200,000원 직무수당 50,000원
급여 계 1,425,120원	임금 계 1,250,000원

2 추려 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합니다.

* 시간당 임금 환산 방법 : 추려낸 임금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유 8시간) ÷ 7 × 365) ÷ 12월

3 2016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6,030원)과 비교하여 판단 합니다.

1,250,000 원
÷ 209 시간
5,981 원

< 6,030원
최저임금
위반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www.minimumwage.go.kr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를 참고하세요